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, 송달이 불가능하여(폐문부재)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6. 7. 23.

경기도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



- 1. 건명: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미납부 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
- 2. 근거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,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	법인등록번호	주소	대표	공시송달 내용
(주)태왕이앤씨 ○ 공사현장명 - 과천주암 C-1BL 공동주택 건설공사 1공구	170111-0*****	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03 (남일동)	김**	2026. 8. 6.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지시 (기한 내 미납부시 과태료 부과 예정)

- 4. 공고기간: 2026. 7. 23.~2026. 8. 5.(14일간)
- 5. 기타사항은 경기도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노동기준조사2과 근로감독관 김세중(031-463-741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